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20
----------	-----

2019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19년 8월 7일
- 다. 회부일 : 2019년 8월 13일
- 라. 상정일 :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원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위탁 사무의 범위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길 99
- 개관일자 : 1998.01.22.
- 시설규모 : 부지 3,560㎡, 건물 8,246㎡(지하 2층, 지상 6층, 별관2층)
- 지원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5) 민간위탁기간 : 3년 (2020.1.1.~2022.12.31.)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589백만원(2019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57백만원, 물건비 741백만원, 경상이전 281백만원, 자본지출 704백만원, 사업비 3,171백만원, 사업 외 지출 93백만원, 예비비 242백만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재단법인 푸른나무청예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은 2019년말 위탁기간 만료¹⁾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2020.1.1.~2022.12.31) 운영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려는 것임.

〈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길 99
- 개관일자 : 1998.01.22.
- 시설규모 : 부지 3,560㎡, 건물 8,246㎡(지하 2층, 지상 6층, 별관2층)
- 지원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민간위탁기간 : 3년 (2020.1.1.~2022.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6,589백만원(2019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사항 없음.

- 평생교육국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평생교육국은 전문성과 시설운영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원수련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음.

1) 현수탁기관((재)푸른나무청예단, 대표 문용린) 위탁기간 : 2016.07.01.~2018.6.30

〈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추진현황 〉

○ 재계약 횟수 : 8회, 총 수탁기간 : 22년

- 1998.06.20 : 1차 위탁계약 체결 (재)푸른나무 청예단(공개모집)
- 2001.02.01 : 2차 위탁계약 체결 (재)푸른나무 청예단(재위탁 공개모집)
- 2004.02.01 : 3차 위탁계약 체결 (재)푸른나무 청예단(재위탁 공개모집)
- 2007.02.01 : 4차 위탁계약 체결 (재)푸른나무 청예단(재위탁 공개모집)
- 2010.02.01 : 5차 위탁계약 체결 (재)푸른나무 청예단(재위탁 공개모집)
- 2013.01.01 : 6차 위탁계약 체결 (재)푸른나무 청예단(재계약)
- 2015.01.01 : 7차 위탁계약 체결 (재)푸른나무 청예단(재위탁 공개모집)
- 2018.01.01 : 8차 위탁계약 체결 (재)푸른나무 청예단(재계약)

- 노원청소년수련관은 기술혁명 시대에 적합한 기술(인공지능, 전자, 3D 프린팅 등)을 청소년들이 체험 및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재난 시 생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 등 137개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나, 고용, 재산 관리, 프로그램 개발, 목표상향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종합평가(2017.03.22.-3.24, 한국정보경영평가(주))에서 종사자 채용시 구비서류 누락, 가족수당 과다지급, 물품관리 대장 미등재 등의 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경과 후 청소년정책과 지도·점검(2018.05.17.)에서도 종합평가의 지적사항과 유사한 인사규정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계약서류미비, 물품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된바 있음.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활동의 전문성, 시설운영의 노하우 등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관에서 단기 또는 계약직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법인의 전문성이 청소년활동에 반영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며,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22년이나 운영한 법인이 시설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인사, 재무, 회계, 물품관리 등)에 대해 매년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행정역량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이 청소년활동을 추진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보다 질 높은 청소년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민간위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단체 중 청소년활동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지적사항 〉

- 업무인수인계서는 5일내 작성되어야 하나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날자 누락, 인계인수자 서명 누락
- 18년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청소년 코디네이터 사업은 종사자를 채용경력기준을 위반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코디네이터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자체 세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 후 직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추진사항도 당초 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기존 지역연계 행사위주로 진행함.
-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매출전표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나 매출전표에 기재사항 서명 등 누락 및 카드 포인트 관리 미흡
- 18.02.23. 퇴사 직원 송별회 회식비(30만원) 지에는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참석자 명단 미작성하는 등 지출결의 부적정
- 서울시 노원청소년 수련관 기계실 및 급탕 탱크 교체 공사” 관리 부실(공사 관련 자재 검수시 자재의 규격, 수량 등을 입고시 확인하여야 하나, 자재 승인신청서미작성)
- 17~18년 11월 정기재물조사시 계획서에 조사반 미편성, 일부 물품을 누락, 재물조사표 미부착, 비품 운영카드 미작성 등 재물조사계획과 결과보고가 부실함.
- 연간 사업계획서 내에 안전관리계획은 잘 작성되어 있으나, 2층의 복도와 계단 등 소방법에 의한 피난로에 헬스기구등이 설치되어 소방시설법 피난, 방화시설이나 구역을 훼손하였음
- 연간사업계획서 내에 위수탁협약서 제6조(사업계획) 제2항 근로조건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으나 미반영
- 중기 및 연간계획서에 평가 계획이 수립 및 평가 지표개발이 되어 있지 않음
- 자체적 회의와 설문지로만 평가되어 객관적 평가가 어려움
- 신규사업 프로그램 계획서에 본 사업을 개발하게 된 전년도 설문조사 결과, 의견조사 결과 내용 반영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20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원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의 범위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길 99
- 개관일자 : 1998.01.22.
- 시설규모 : 부지 3,560㎡, 건물 8,246㎡(지하 2층, 지상 6층, 별관2층)
- 지원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 (2020.1.1. ~ 2022.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589백만원('19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57백만원, 물건비 741백만원, 경상이전 281백만원, 자본지출 704백만원, 사업비 3,171백만원, 사업외 지출 93백만원, 예비비242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은진 (☎2133-4122)